오산시의회 공고 제2020-36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회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지회 회원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8-418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7일

발 의 의 원 : 김영희 의원

찬 성 의 원 : 장인수, 김명철,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회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지회 회원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오산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지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